공고 조리읍 제 47 호

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9년 12월 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조리읍주민센터　　담당자 : 박순자　　문의전화 : 031-940-8131)

세대주성명	성　　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강**	안** 1982-04-13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두루봉로	무단전출

※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

2019년 11월 22일

조리읍장 (인)